

의안번호	2216567
의 퇴 인	김윤 의원
회 답 일	2026. 3. 13.
추 계 번호	26C0667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3조의2 (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)	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의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함	의무규정
2	안 제12조의4 (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)	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부설기관으로서 자살예방정책연구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12조의5 (형사사법정보와 공공 데이터의 결합·분석)	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, 자살통계의 작성, 자살 및 자살예방 관련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음 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되는 사회보장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. 국민건강보험공단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·보유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	재량규정
4	안 제20조의2 (취약계층 지원기관간 연계 체계) 제2항	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자살위험성 판정도구를 개발·보급하고 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20조의2 (취약계층 지원기관간 연계 체계) 제4항	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에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22조의2(자살예방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) 제1항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 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며,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22조의2(자살예방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) 제2항	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23조 (민간단체 등의 지원) 제3항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상담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담 등 지원 업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의2 (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조의4 (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)	
3	안 제12조의5 (형사사법정보와 공공 데이터의 결합·분석)	
4	안 제20조의2 (취약계층 지원기관간 연계 체계) 제2항	
5	안 제20조의2 (취약계층 지원기관간 연계 체계) 제4항	
6	안 제22조의2(자살예방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) 제1항	
7	안 제22조의2(자살예방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) 제2항	
8	안 제23조 (민간단체 등의 지원) 제3항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□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(안 제3조의2)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 구조 행위로 인한 민사·형사 책임 감경 또는 면제 시, 국가가 행위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비용 및 벌금 등 형사 책임 감경·면제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해당 대상 사례 수 및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
- (안 제12조의4)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운영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행법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업무로 자살예방 연구·개발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동 재단 내 정책연구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, 개정안 시행 시 현행 운영방식 대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및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움
- (안 제12조의5) 형사사법정보와 관련 정보의 결합·분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결합·분석 대상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규모,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추정하기 어려움
- (안 제20조의2제2항) 자살위험성 판정도구 개발·보급 및 정보시스템 간 연계 지원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및 시스템 구축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판정도구 개발 범위 및 방식,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의 수와 구축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려움
- (안 제20조의2제4항)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자살위험자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운영비, 회의 개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협의체 구성 기관의 범위 및 수, 운영 방식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움
- (안 제22조의2제1항)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, 복지 증진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급여 인상이나 보호 조치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함

- (안 제22조의2제2항)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시설비, 인건비, 운영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센터의 설치 규모, 수행 기능 및 운영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추계가 어려움
 - (안 제23조) 상담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기관의 수, 상담 건수 및 지원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추계가 곤란함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